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6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서왕진 · 신장식 · 정춘생
김선민 · 박은정 · 강경숙
이해민 · 김준형 · 김재원
차규근 · 백선희 · 황운하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법무부는 정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행정의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 행정기관임. 그러나 오랜 기간 검찰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무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 권력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수사·기소권을 앞세운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무부는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행정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락하였음. 특히 파견 검사 제도는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인권 감시 기능마저 훼손시켜 온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로 지적됨.

이제 법무부를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정의 수호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탈검찰화’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법무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됨.

이에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을 핵심 책무로 하며, 수사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아울러 임용 자격, 직무, 인사체계, 정치 관여 금지, 징계 및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하위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법무행정을 수사·기소 중심의 검찰사무와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전문 공무원제도로서 ‘법무행정관’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처 또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소속 1급 이상 공무

원은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법무행정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함(안 제7조).

라. 법무행정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파견되거나 해당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1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부 소속 법무행정관의 임용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행정관의 직무) ① 법무행정관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 검사의 범죄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에 필요한 사항
3. 다른 법령에 법무행정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법무행정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무행정관의 임명 등) ① 법무행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법무행정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③ 법무행정관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처 또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검사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법무행정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관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법무행정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무행정관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소속 하급자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관에 대한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법무행정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보수 및 징계) 법무행정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한다.

제8조(법무행정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법무행정관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법무행정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법무행정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법무행정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무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법무행정관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법무행정관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법무행정관의 연임 심사는 「공소청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1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법무행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법무행정관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무한 법무행정관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법무행정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법무행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14조(법무행정관의 파견) 법무행정관은 수사처, 공소청,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법무행정관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6조(정치 관여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행정관 임용에 관한 준비행위) 법무행정관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법무행정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공소청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로서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을 겸임하였던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 중 “검사”를 “법무행정관”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법무행정관”으로 한다.